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의 장

제35호 2023. 7. 21(금)

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3-1437호 공시송달공고----- 1
- 남원시 공고 제2023-1514호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----- 4

회 람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공고 제2023 - 1437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』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명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,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3. 7. 17. ~ 2023. 8. 1. (15일간)
2. 공고장소 :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,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시송달 내용

처분의 제목	소유자 현황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	성 명	주 소		위 치	건축물현황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(말소일 : 2023.7.17.)	박○근		건축물 부존재	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1027-1	주1 목조 주택 27.8㎡ 부1 브록 창고 2.3㎡ 부2 목조 창고 10㎡

4. 기타사항

가.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(☎063-620-659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7. 17.

남 원 시 장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남원시장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《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》

- 1.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,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3.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- 4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담당부서 :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 건축지원담당
 - 연 락 처 : 063) 620-6597

남원시 공고 제2023-1514호

「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24일

남 원 시 장

**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
조례 제정안 입법예고****1. 제정이유**

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사업 및 예산 지원, 협력사업 규정(안 제3조~안 제5조)
- 다. 대학협력위원회 관련 규정(안 제6조~안 제15조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3. 7. 24. ~ 2023. 8. 13.(20일간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기획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기획실
기관유치팀장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02), 이메일(airix@korea.kr),
직접방문 등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(☎063-620-609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붙임 : 「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
조례」 제정안

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3. 6. .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제안설명자: 기 획 실 장

1. 제정이유

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 규정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사업 및 예산 지원, 협력사업 규정 (안 제3조~안 제5조)
- 다. 대학협력위원회 관련 규정 (안 제6조~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: 2023. 7. 24. ~ 2023. 8. 13. (20일간)
 - 결 과:
 - 2) 비용추계서: 붙임
 - 3) 규제예비심사: 완료
 - 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 - 5) 부패영향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대학”이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.
2. “대학협력”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계획의 수립) 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
2.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
3.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
4.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사업 및 지원)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·추진

2. 지역의 경제·역사·문화·관광·교육 진흥 등에 대한 협력
3.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

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대학 등이 교육시설을 시 지역 내로 설치·이전하는 경우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연구시설의 지원) ① 시장은 지역사회환경 변화 대응과 지역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대학에 대하여 교육용·연구용 시설·설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.

1. 지역 사회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
2. 정부정책과 지역정책 연계 관련 학술 토론회
3. 지역 정책이해 지역 주민 교육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정책연구사업 및 주민교육사업

제6조(협력사업의 발굴 선정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)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대학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협력 추진계획
2.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
3. 대학협력 사업 지원
4. 그 밖에 시장이 대학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·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및 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
2. 대학교육,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0조(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(除斥)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, 관계인의 기피(忌避)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,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

관련 법령

□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제4조(보조대상 사업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,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제7조(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)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,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(公募)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

□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

제16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·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·연구용 시설·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·연구조성비·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(교육기반의 확충)

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(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(이하 “지방대학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재정수반요인

-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시·대학 협력 사업 지원
- 대학의 교육·연구용 시설·설비비,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

○ 관련조문

- 사업 및 지원(제4조)
- 연구시설의 지원(제5조)

2. 비용 추계결과

○ 비용추계의 전제

- 대학 및 연구시설 등을 관내 이전 및 신설하여 협력사업 추진
(전북대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등)

○ 비용추계의 결과

- 연간 예산 계획: 300,000천원 (2024년도 예산)
 - 운영비 : 50,000천원
 - 연구비 : 100,000천원
 - 교육비 : 50,000천원
 - 시설비 : 100,000천원
- 연도별 예산 추계

(단위: 천원)

연 도	합계	2023	2024	2025	2026	2027
총비용	9,300,000	0	300,000	3,000,000	3,000,000	3,000,000
운영비	350,000	0	50,000	100,000	100,000	100,000
연구비	700,000	0	1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
교육비	350,000	0	50,000	100,000	100,000	100,000
시설비	7,900,000	0	100,000	2,600,000	2,600,000	2,600,000

3. 재원 조달 방안

- 재원조달계획 : 시비 편성, 도비 및 대학 예산 확보

4. 그 밖의 사항

- 작 성 자 : 기획실장 안순엽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		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